

2015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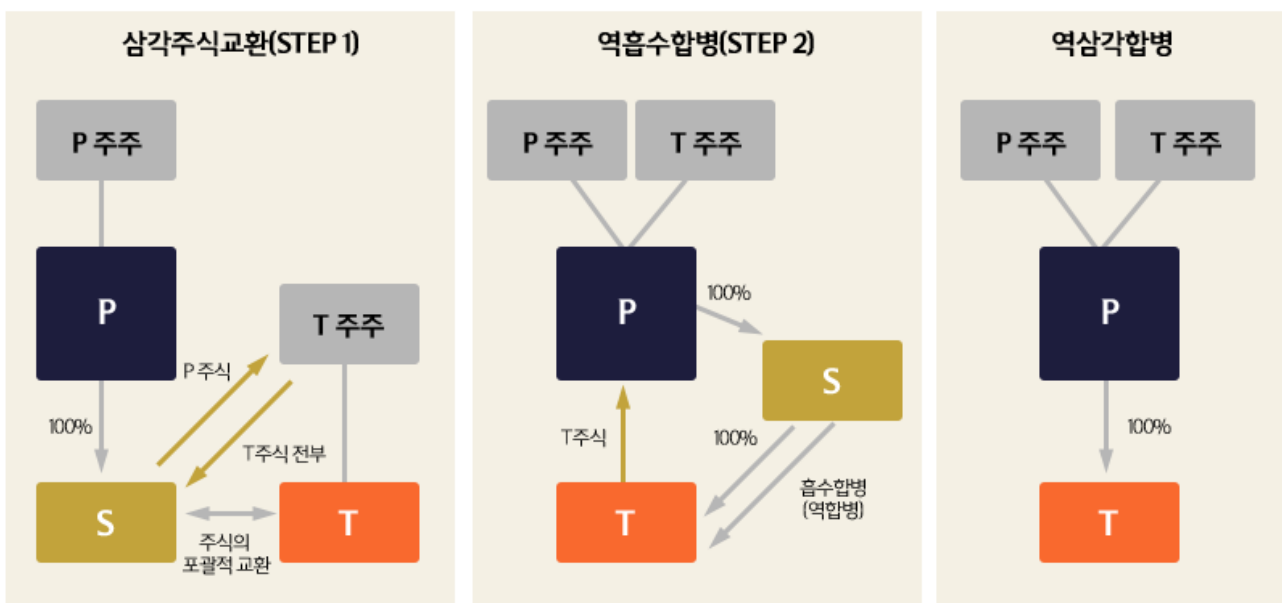
지난 2015. 11.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 3. 2.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상법(“개정상법”)은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업조직재편 등에 관한 여러 제도를 도입·개선하였습니다. 이하에서, 2015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봅니다.

1. 삼각조직재편제도의 보완(삼각주식교환 및 삼각분할합병의 도입)

개정상법은 2011년 상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삼각합병제도의 외연을 확장하여 삼각주식교환(제360조의3 제3항 제4호, 제6항) 및 삼각분할합병(제530조의6 제1항 제4호, 제4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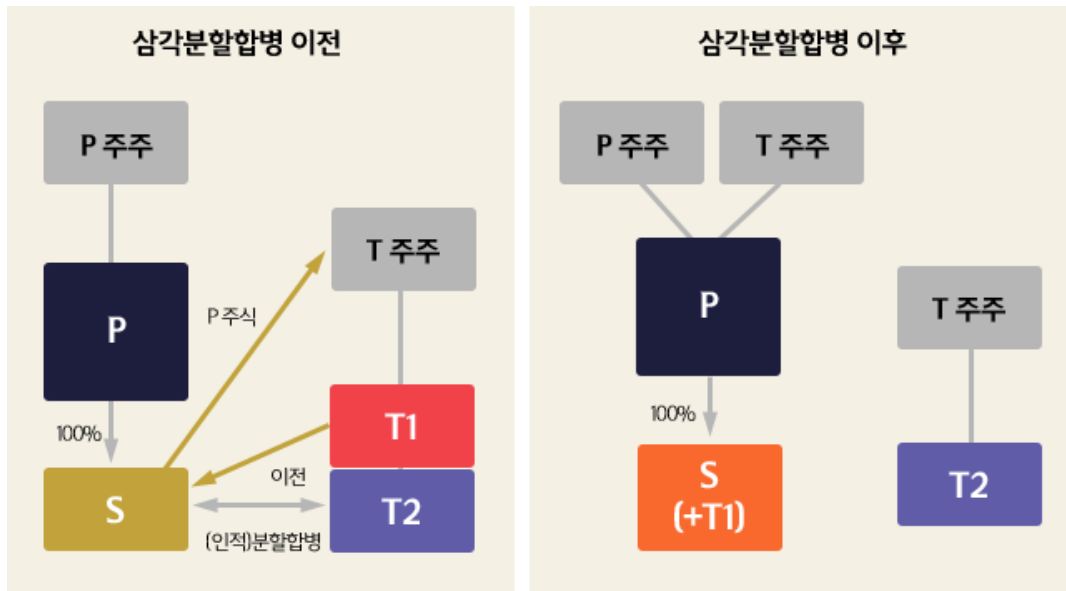
우선,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삼각주식교환에 의해 인수모회사(P)가 자회사(S)로 하여금 인수대상회사(T)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그 대가로 T의 주주들에게 P의 주식을 지급하도록 하여 $P \Rightarrow S \Rightarrow T$ 로 순차적인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성립(1단계)하고, T가 S를 흡수합병(2단계)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역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P는 T가 보유한 인허가, 중요 라이선스 또는 계약관계 및 재산 등에 대한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T를 인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처럼 상기 방식의 역삼각합병 절차에 의해 외국회사가 국내회사를 인수하는 국제적(Cross-border) M&A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역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역합병)의 구조



다음으로,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분할(인적분할의 경우)되는 T의 일부 사업부문(T1)을 승계회사인 S가 합병하면서 그 대가로 T의 주주들에게 P의 주식을 지급하는 삼각분할합병이 허용됨으로써 P의 입장에서 T의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이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삼각분할합병의 구조



한편, 삼각조직재편제도의 실행 과정에서는 당사회사의 성격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상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기타 등기, 외국환거래 또는 당사회사 사업규제 관련 법령상 제반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회계·세무상 고려사항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기업조직재편의 대가 관련 개정

개정상법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종래 조직재편의 대가로 자기주식을 제공해 온 실무례를 반영하고 합병에 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신설합병 및 분할합병의 대가를 보다 유연화하였습니다.

항 목	주요 내용
조직재편 대가로서 자기주식 이전 명문화	합병·분할합병 등의 조직재편 대가로서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있음을 명문화(제523조 제3호, 제530조의6 제1항 제2호, 제3호. 주식교환의 경우 제360조의6을 삭제하면서 그 취지를 반영하여 제360조의2 제2항 등을 개정) ※ 소규모합병을 위해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발행주식총수 10% 이하'의 주식에 신주뿐만 아니라 자기주식도 포함(제527조의3 제1항) ⇒ 구법 아래에서 자기주식을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소규모합병을 실행하여 온 기존 실무례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조직재편 대가의 유연화 범위 확대	주식교환, 신설합병 및 분할합병의 대가로서 금전 기타 재산의 제공을 허용(제360조의3 제3항 제4호, 제524조 제4호, 제530조의6 제1항 제4호)
-----------------------	---

3. 기업 인수·합병 관련 제도 간이화

개정상법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소규모합병에 준하여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을 완화하고 간이합병에 준하여 영업양수도·임대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이사회결의만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영업양수도에 의한 M&A가 더욱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 목	주요 내용
소규모주식교환 요건 완화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의 대가로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종전: 5%) 이하(제360조의10 제1항 본문)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의 5%(종전: 2%) 이하(제360조의10 제1항 단서)
간이영업양수도· 임대 제도 도입	영업의 양수, 양도 또는 임대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 또는 그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 실행 가능(제374조의3 제1항)

4. 분할 및 분할합병 시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채무의 범위 명확화(제530조의9 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신설회사 또는 승계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연대책임이 배제될 수 있었기에 실제 분할계획서 등에서 이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도 그것이 출자한 재산에 관한 것이면 연대책임이 문제되고 그 구체적 범위도 논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상법은 신설회사 또는 승계회사가 연대책임의 배제로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연대책임 배제 과정에서 당사회사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방식의 연대책임 배제가 세무상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522조의3 제1항)

종래 합병 등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회사의 중요 사안과 관련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주주에게도 당해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상법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합병 등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회사의 매수의무 발생 시기(始期)가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 되어 있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별로 주식매수의 기한이 달라져 회사의 절차상 부담이 있었는데, 개정상법은 일괄적으로 반대주주가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회사의 매수의무가 발생하도록 하여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장회사의 경우 종래 자본시장법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상기 개정사항에 준하는 사항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김병태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38 | E-Mail. btkim@shinkim.com |
| ● 김광복 변호사 | TEL. 02 316 4064 | E-Mail. kbkim@shinkim.com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